



문서번호 : 상품전략팀 2019-06-0006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제 목 : 소규모펀드(1개월)여부 안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당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펀드명 : 플러스 ETF 분할매매 증권투자신탁 1호(채권혼합)

나. 소규모펀드 발생일자 : 2019년 05월 03일

다. 근거규정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3항제5호

- 제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

③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5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

첨부 : 소규모펀드 대상리스트. 끝.

2019년 06월 03일
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
상 품 전 략 팀 장



수신처 : 농협은행, 대신증권, 미래에셋대우, 하나금융투자, 하나은행, 한국투자증권, 한양증권

